

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10. 4. 22)
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공원녹지과장 조용환)

□ 제안이유

○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을 활용하여 신·구도심간의 도시공원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한바 실효성이 상실 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“동 조례 폐지”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문	답	변
○ 중동 상업용지가 아직 남아있고 본 조례의 효력도 2013년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?		○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전입된 예산이 전무할뿐 아니라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어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고 하는것임.	

질 문	답 변
<p>○ 특별회계로 전입된 예산이 전무하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 및 의지와 다르게 변칙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본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매각 대금을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운용 할 계획은?</p> <p>○ 조례를 제정하면 활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음.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로 행정 추진에 변화가 필요함.</p>	<p>○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로 지원되어 활용하여도 공원조성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 하려고 함</p> <p>○ 앞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584호
의결 년월일	2010. 4. 26 (제160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4. 1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을 활용하여 신·구도심간의 도시공원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한바 실효성이 상실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“동 조례 폐지”

□ 첨 부: 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현행 조례전문)

부천시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정 2004. 04. 12 조례 제2015호

개정 2010. 01. 11 조례 제2466호(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을 활용하여 부천시의 신·구도심간의 공원녹지 확충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원”이라 함은 「도시공원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과 녹지공원 확충을 위한 쌈지공원(소공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0.01.11>

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신·구도심간의 공원녹지 확충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10.01.11>

1. 일반회계 전입금
2.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
3. 기타 수입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

1. 공원조성관련 토지매입비, 공원조성 시설비
2.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

제6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2004. 04. 12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<2010.01.11 조례 제2466호> (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